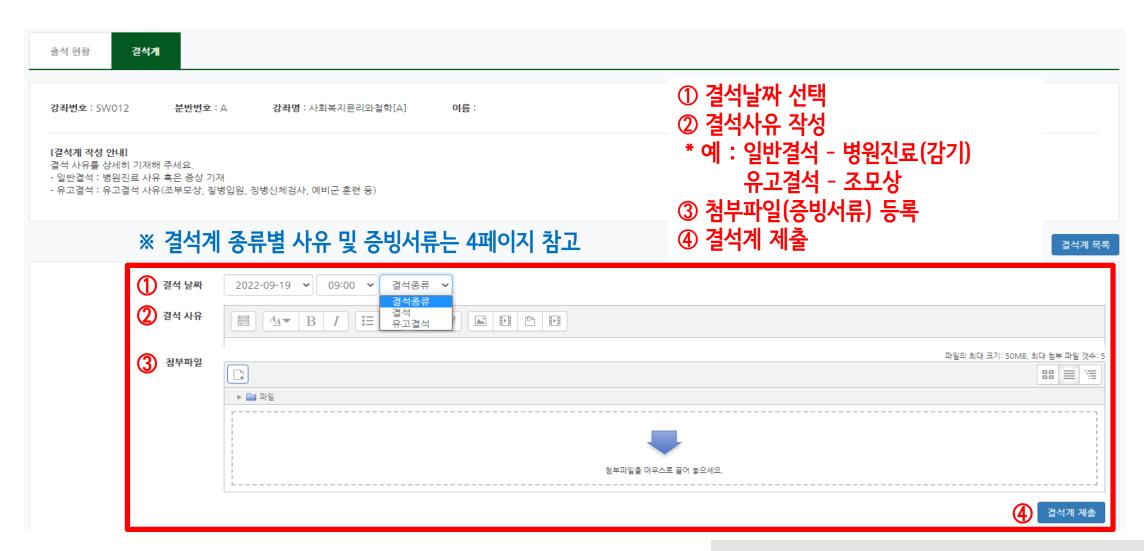
#### 1. 결석계 작성 및 제출(1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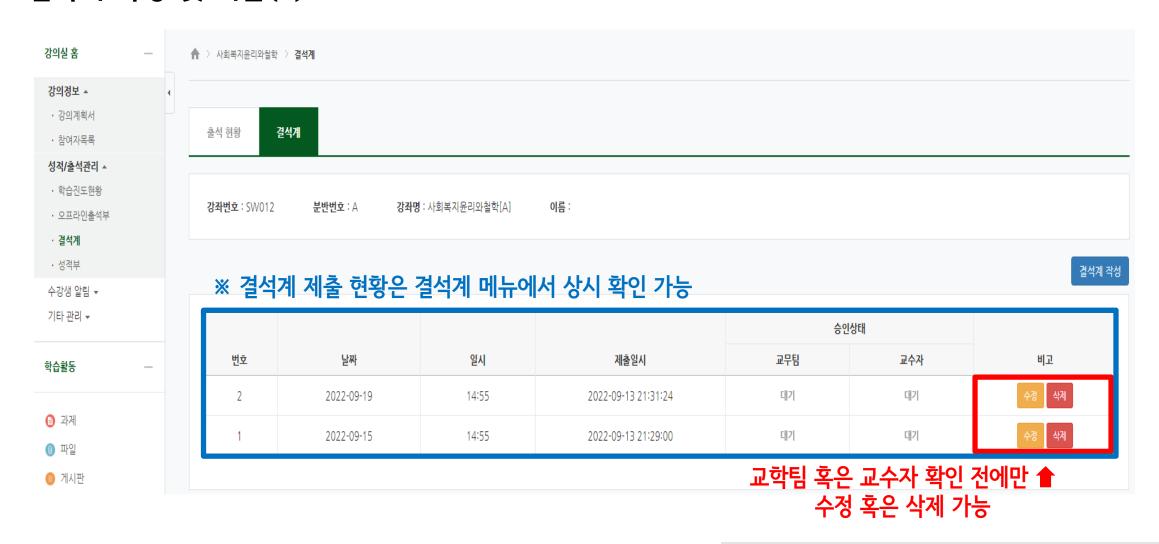
### 1. 결석계 작성 및 제출(2)



#### 1. 결석계 작성 및 제출(3)



#### 1. 결석계 작성 및 제출(4)



#### 2. 결석계 종류별 사유 및 증빙서류

☞ 관련 규정: 학사규정 제9조(결석인정범위)

유고결석 사유		인정기간	증빙서류
출산	본인	20일	출산확인서
	배우자	5일	
혈족사망	부모·자녀·배우자	5일	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
	조부모·형제자매	3일	
본인질병	입원	해당기간 (최대2주)	입·퇴원확인서
	격리		진단서(전염성 및 격리일자 명시)
병무관계	신체검사	해당기간	참석확인서(신체검사결과통보서)
	지원시험		
	예비군 및 민방위		
	전역예정자 조기복학	해당기간 (최대2주)	전역증
학교 공식행사		승인기간	교학처장 승인 서류
기타 부득이한 사유		승인기간	교학처장 승인 서류

일반결석 사유		인정기간	증빙서류
본인질병	진료	해당기간 (최대3주)	진료확인서

#### 3. 코로나19 관련 결석계 사유 및 증빙서류

※ 유고결석 : 유고결석으로 처리되어 결석으로 간주하지 않고 출석점수 감점 X

유고결석 사유		인정기간	증빙서류
코로나19	확진(자가격리)	해당기간	확진(격리)통지서
	의심증상	해당기간	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('코로나19 의심증상' 소견 명시)
	백신접종	당일·익일	예방접종확인서

※ 일반결석 : 결석으로 처리되나 출석점수 감점 여부는 담당교수 재량

일반결석 사유		인정기간	증빙서류
코로나19	백신접종 이상반응*	해당기간 (최대3주)	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('백신접종 이상반응' 소견 명시)

\* 백신접종 익일 이후 결석에 해당

#### 4. 출석 대체 인정 신청

- 1) 신청 사유
- ① 교육과정에 의한 실습(최대4주)
- ② 졸업예정자 조기취업(최대4주)
- 2) 신청 절차
- ① 출석에 상응하는 활동을 수행하여 출석 대체 인정 가능 여부 담당교수에게 사전 확인
- ② 담당교수 승인 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결석계(결석종류 출석인정) 제출
- ※ 결석계(결석종류 출석인정) 증빙서류
- 교육과정에 의한 실습: 실습확인서 → 실습기간 명시
- 졸업예정자 조기취업: 건강보험가입증명서